

연구업적 산정기준

I. 공통사항

1. 논문·논설, 저서, 산학협력(개정 2022.04.06., 2023.04.13., 2024.01.24., 2025.02.27.)

항목	번호	세부항목	기준점수(%)			필수	비고	
			인문·사회	예능	이공			
논문·논설	국제학술지	1	• 국제학술지 S(JCR 분야별 상위 5% 이내 SCIE, SSCI, A&HCI)	700	700	700	○	
		2	• 국제학술지 A(JCR 분야별 상위 25% 이내 SCIE, SSCI, A&HCI)	650	650	650	○	
		3	• 국제학술지 B(JCR 분야별 상위 50% 이내 SCIE, SSCI, A&HCI)	500	500	550	○	
		4	• 국제학술지 C(JCR 분야별 상위 75% 이내 SCIE, SSCI, A&HCI)	350	400	350	○	
		5	• 국제학술지 D(JCR 분야별 하위 25% 이내 SCIE, SSCI, A&HCI)	300	300	300	○	
		6	• 국제학술지 E(SCOPUS)	200	250	200	○	
		7	• 국제일반학술지(ESCI 등)	150	150	150		
	국내학술지	8	•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150	150	100	○	
		9	•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100	100	50	○	
		10	• 전국규모의 국내학술지	50	50	0		
		11	• 기타국내학술지 (국내전문학술지, 대학논문집 및 대학부설연구소 논문집, 기념학술논문집, 전문잡지 등 단, 논문형식 갖춘 것에 한함)	30	30	0		
저서	1	• 국제전문학술도서	400			○	초판에 한함	
	2	• 국내전문학술도서	300			○		
	3	• 도서번역(전공분야)	150					
	4	• 교양도서(전공분야)	100					
	5	• 중고등학교의 교과용 도서 (강의용 도서와 참고서 불인정)	50					
	6	• 국제전문학술도서 개정판 (전공분야의 2nd Edition에 한함)	100					
	7	• 편저(국내외 전문학술도서)	75				초판에 한함	

항목	세부항목	기준점수(%)			필수	비고
		인문·사회	예능	이공·체육		
산학협력	지식재산권	1	• 국제특허 등록	200	○	본교 연구산학 협력단에 등록된 것에 한함
		2	• 국제특허 출원	100		
		3	• 국내특허 등록	100	○	
		4	• 국내특허 출원	50		
		5	• 지식재산권(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신제품,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등)	20		
	외부 연구비 수주 실적	6	• 간접비 납부 실적	20만원당 1%	○	연간실적 (연도 기준), 300%한도
	기술이전	7	• 기술이전료	50만원당 1%	○	연간실적 (연도 기준), 200% 한도
	산업자문	8	• 간접비 납부 실적	20만원당 1%		연간실적 (연도 기준), 200% 한도
	교원창업	9	• 신규창업	100		
수상	1	• 전공분야의 훈장	100			

가. 평가계열은 소속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단, 학술지의 연구분야 및 논문 내용에 따라 소속과 다른 계열로 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학술연구위원회와 학술연구위원회 소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신청 계열의 점수로 평가받을 수 있다.(신설 2023.03.16., 개정 2023.04.13.)

나. 학술지 구분 및 JCR(Journal Citation Reports) 분야별 상위 백분위 확인.(개정 2019.05.10., 2020.06.22., 2024.11.08.)

학술지 구분	적용 백분위	인터넷 주소
SCIE, SSCI	JIF 상위 백분위	https://jcr.clarivate.com/
A&HCI	JCI 상위 백분위	

- 1) JCR 분야별 상위 백분위는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학술지의 카테고리 내 순위에 따른 백분위를 의미함.
- 2) 논문이 게재된 해의 가장 최근 JIF 또는 JCI를 적용하며, 카테고리가 다수일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값을 적용함.

- 다. 전국규모의 국내학술지 : 논문기고자의 분포가 전국적이며, 논문심사제를 채택하고 연간 3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간하면서 3년이 경과된 학술지 또는 연간 2회 발간하면서 5년이 경과된 학술지를 말한다.
- 라. 논문게재인정일자(신설 2011.10.01. 개정 2018.09.01.)
- 1) 연구업적 신청 시, 권·호수 및 페이지 번호 부여되어 게재가 최종 확정된 논문의 게재일자만 인정함. 단, 해당 학술지가 온라인 게재일자만 있을 경우, 해당 게재일자를 인정함.
 - 2) 연구업적이 인정된 후 날짜를 변경하여 재신청할 수 없음.
 - 3) 논문인정 기준(신설 2021.08.30.)
 - 한국연구재단등재(후보)학술지는 KCI 검증 완료
 - SCIE는 Web of Science DB 검증 완료
 - SCOPUS는 대학정보공시의 정규논문으로 인정되는 문서유형(4종)으로 검증 완료
- 마. 모든 저역서 업적은 ISBN이 있는 출판본을 기준으로 배점하며, 국제전문학술도서는 전공 해당국가 및 G7 국가의 출판사 및 대학 출판사에서 출간한 도서에 한한다. 모든 저역서 업적은 학술연구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된 것에 한하며, 논문모음집, 수험서, 워크북, 자기출판물, POD 출판물은 제외한다. 다만, POD 출판물 중 출판사 차원의 심사 또는 품질관리 절차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5.10., 2021.09.01., 2022.04.06., 2026.03.30.)
- 바. 국제특허 출원 및 등록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특허를 복수의 국가에 반복하여 출원 및 등록할 경우, 첫 번째 출원 및 등록 건에 대해 연구업적 점수를 부여하며, 이후 출원 및 등록 건에 대해서는 연구업적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신규 2019.05.10.)
- 사. 외부연구비 수주실적은 본교 연구산학협력단에 등록된 과제에 한하며, 과제시작일 기준으로 기산한다.
- 1) 간접비 납부실적은 간접연구비 총액에서 교내 대응자금(현금)을 공제한 순수 간접비 납부실적을 의미함.
 - 2)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에 한하여 연구업적으로 인정하며, 교내 교수 2인 이상이 참여하는 외부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는 간접비의 2/(n+1), 공동연구원은 간접비의 1/(n+1)을 간접비 납부 실적으로 인정함.(개정 2019.02.27.)
- 야. 교원 신규창업은 연구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교원 인사위원회의 겸직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신설 2019.01.17.)
- 자. 저서는 해당 교원의 전공분야와 부합하여야 한다.(신설 2021.08.30.)
- 차. 전문학술도서 중 전공분야 전문도서 인정여부는 필요 시 해당분야 소위원회의 검토 결과를 학술연구위원회 심의에 참고할 수 있다.(신설 2021.08.30., 개정

2026.03.30.)

- 카. 한국연구재단 CS(Computer Science) 분야 우수국제학술대회 IF 1~4의 경우, IF 4는 국제학술지 A급, IF 3은 B급, IF 2는 C급, IF 1은 D급의 점수를 부여한다.(Regular 논문에 한하고 한국연구재단에서 인정한 목록과 연동하여 반영함)(신설 2023.03.16., 개정 2025.02.27.)
- 타. 이공(이론) 계열 학과의 경우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점수는 150%로 한다.(신설 2023.03.16., 개정 2024.01.24.)
- 파. Cell, Nature, Science의 경우 S등급 기준점수의 1.2배 점수를 부여한다.(신설 2023.03.16.)

2. 산정 환산율

- 가. 모든 저자는 1명으로 간주하며, n은 저자 수를 의미한다. 단, SCIE급 학술지 논문게재 시, 우리 대학 교원이 교신저자인 경우에 한하여 우리 대학 출신 학부생은 0명, 대학원생은 0.5명으로 반영한다.(소속 표기가 본교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개정 2021.01.01., 2023.03.16.)
- 나. 저자수가 단독(n=1)일 경우, 기준점수의 100%로 산정하며 저자의 구분 및 수에 따라 차등 산정한다.
 - 1) 논문 · 논설
 - 가) 단독 : n=1
 - 나) 주저자(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가 있는 경우 : 주저자 $2/(n+1)$, 공동저자 $1/(n+1)$.
 - 다) 주저자(제1저자 혹은 교신저자)가 없는 경우 : $1/n$.(단, 해당 학술지와 교신한 이메일 기록 제출, 해당 학술지로부터 받은 확인서 제출 등 주저자를 증명할 경우에는 나)항에 의함.)
 - 라) 나), 다)의 경우, 주저자는 최소 0.3 인정
 - 마) 국제학술지 S급 이상의 주저자인 경우 기준점수의 20%, 국제학술지 B급 이상의 주저자인 경우 각 기준점수의 10%를 가산점으로 부여함.(각 기준점수 이상은 가산하지 않음.)(개정 2023.03.16.)
 - 2) 저서
 - 가) 단독 : n=1.
 - 나) 공동 : $1/n$.(단, 저자 수에 관계없이 최소 0.2 인정.)
 - 3) 지식재산권 · 기술이전
 - 가) 단독 : n=1.
 - 나) 공동 : 기준점수*지분율.(단, 발명자 수에 관계없이 최소 0.2 인정.)(개정 2018.09.01., 2020.06.22.)

다)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의 지분율은 연구산학협력단에 제출된 발명신고서를 근거로 함. 단, 제출된 발명신고서가 없는 경우, 발명 지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예 -발명에 대한 지분 확인서)로 대체함.(신설 2020.06.22. 개정 2021.02.17.)

4) 산업자문(신설 2025.02.27.)

가) 단독 : $n=1$.

나) 공동 : 기준점수*산업자문 참여율

다) 산업자문 참여율은 연구산학협력단에 제출된 산업자문 신청서를 근거로 함

다. 연구업적의 부여점수는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반영한다.(신설 2019.01.17.)

II. 창작 및 실기활동

1. 공통사항

- 가. 모든 개인 실기발표물의 연구업적은 해당 대학 학술연구위원회 소위원회에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09.01.)
- 나. 업적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교원의 소속과 이름이 명시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미술대학(개정 2017.03.01. 2018.09.01., 2019.01.01., 2019.02.27., 2020.06.22., 2025.02.27.)

번호	업적항목	세부사항	기준 점수(%)	필수	비고
1	개인전	가. 세계적 권위의 국제전	200	○	
		나. 국제 미술관·박물관 초대개인전	175	○	
		다. 국내 미술관·박물관 초대개인전	150	○	
		라. 국제 전문미술기관 개인전	150	○	
		마. 화랑협회 등록 전문화랑 개인전	125	○	
		바. 미술대학선정 전문화랑 개인전	100		
		사. 기타 일반 개인전	50		
2	단체전	가. 국제 미술제 선정 초대 단체전 및 국제 개인부스전	100	○	
		나. 공인된 단체 및 미술관·박물관 기획전	75	○	
		다. 국제 전문미술기관 및 화랑협회 등록 전문 화랑 단체전	30		
		라. 기타 일반 단체전	15		
3	전시 기획	가. 국제 미술제 전시기획	150	○	
		나. 공인된 단체 및 미술관·박물관 전시기획	100	○	
		다. 국제 전문미술기관 및 화랑협회 등록 전문 화랑 전시기획	50		
		라. 기타 일반 전시기획	30		

- 가. 2항의 단체전은 국내·외적으로 지명도가 없는 장소의 아트페어 및 자비로 참가하는 지역적 아트페어는 인정 불가하다.(신설 2018.09.01.)
- 나. 3항의 전시기획은 전시계획의 수립과 진행 및 결과발표(전시, 도록, 서문 등)의 모든 과정을 실행함을 말한다.(기획자가 n명일 경우, 1/n) 또한 교내 봉사에 해당하는 전시회(학생지도(졸업생 포함) 및 교내 행사와 관련된 전시회, 취업관련 전시회 등)는 제외한다.
- 다. 화랑협회 등록 전문화랑에 해당하는 외국화랑은 그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 라. 국제 전문미술기관이란 OECD와 중국의 공립, 사립화랑과 레지던시 등을 포함한다.(신설 2019.01.01.)

마. 전시분류

1) 개인전

구분	상세분류
세계적 권위의 국제전	베니스 비엔날레, 상파울로 비엔날레, 카셀 도큐멘타, 윈스터 조각 프로젝트, 광주 국제비엔날레, 바젤 아트 페어 등 세계적 권위가 인정되는 국제전으로 국가나 동시대의 중요 이슈를 대표하는 작가로서 참여하는 개인전에 준하는 성격의 국제전
국제 미술관·박물관 초대개인전	국제적인 국립미술관 및 이에 준하는 사립미술관으로 폼피두센터, 구겐하임미술관, MOMA미술관, 모리미술관, 리움미술관 등 세계적 수준의 미술관으로 인정되는 기관에서 주관하는 개인전
국내 미술관·박물관 초대개인전	국내의 국·공립 미술관, 국·공립 박물관, 한국사립미술관협회 소속 미술관,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산미술관, 서울대학교미술관, 홍익대학교 현대미술관, 일민미술관, 조선일보미술관, 두산아트센터에서 주관하는 개인전
화랑협회 등록 전문화랑 개인전	화랑협회에 등록된 화랑 및 오뉴월갤러리, 공간일리, 갤러리도스, 갤러리담, 더아트나인갤러리, 코사갤러리, 장디자인아트, KCDF갤러리, 예울(재단법인예울), 갤러리팩토리, 누크갤러리, 경인미술관, 공아트스페이스, 동덕아트갤러리, 갤러리라메르, 통인화랑, 에이라운지갤러리, 갤러리완물, 갤러리아원, 갤러리LVS, 갤러리밌, cr컬렉티브, 파이프갤러리, 갤러리인사1010, 마루아트센터, 슈퍼리어갤러리, 이랜드갤러리,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 디아트플랫폼요갤러리, 갤러리콜론비에서 주관하는 개인전
미술대학 선정 전문화랑 개인전	갤러리인사아트, 인사아트센터, 노암갤러리, 두산갤러리, 롯데백화점갤러리, 목인화랑, 성북동 갤러리, 송은아트스페이스, 신세계백화점갤러리, 일우스페이스, 장은선 갤러리, 팔레트 서울, 현대백화점갤러리, 대안공간루프, 사루비아, 보안여관, 수에노,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LKATE갤러리, 산울림아트엔크래프트, 갤러리스클로, 갤러리빙 중 하나의 전시공간에서 주관하는 개인전
기타 일반 개인전	화랑협회 등록 전문화랑과 미술대학선정 전문화랑을 제외한 미술전문인을 위한 전시공간에서 주관하는 개인전

2) 단체전(2인 이상)

구분	상세분류
국제 미술제 선정 초대 단체전 및 국제 개인부스전	베니스 비엔날레, 상파울로 비엔날레, 휘트니 비엔날레, 광주 국제비엔날레,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부산 국제 비엔날레, 청주 국제공예 비엔날레, 이천 국제도자기비엔날레,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카셀 도큐멘타, 메종오브제, 런던 디자이너스 워크, 아르코, 아모리쇼, 바젤, 니카프, 키아프, 마이애미, 요코하마 등 이에 준하는 규모로 10개국 이상 참가하는 아트페어 및 시그라프(Sigraph), 국제디자인협의회(ico-D, 구 Icograda),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Icsid), 국제실내건축가연맹(IFD)에서 주관하는 국제 디자인전 등 이에 준하는 국제 미술제 및 전시행사
공인된 단체 및 미술관·박물관 기획전	국제교류재단이나 국·공립 미술관, 국·공립 박물관, 권위 있는 재단이나 커미셔너에 의해 기획된 국제전,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한 전국 규모의 공·사립 미술관 및 대안공간에서 주관

	하는 전시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단법인 및 법인단체와 광역시, 도 이상의 정부부처 산하단체에서 주관하는 단체전
화랑협회 등록 전문화랑 단체전	화랑협회에 등록된 화랑 및 개인전 전시구분 마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주관하는 단체전
기타 일반 단체전	일반협회나 회원전 성격의 단체전

3) 전시기획

구분	상세분류
국제 미술제 전시기획	베니스 비엔날레, 상파울로 비엔날레, 휘트니 비엔날레, 광주 국제비엔날레,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부산 국제 비엔날레, 청주 국제공예 비엔날레, 이천 국제도자기비엔날레,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카셀 도큐멘타, 메종오브제, 런던 디자이너스 위크, 아르코, 아모리쇼, 바젤, 니카프, 키아프, 마이애미, 요코하마 등 이에 준하는 규모로 10개국 이상 참가하는 아트페어 및 시그라프(Sigraph), 국제디자인협의회(ico-D, 구 Icograda), 국제산업디자인단체협의회(Icsid), 국제실내건축가연맹(IFI)에서 주관하는 국제 디자인전 등 이에 준하는 국제 미술제 및 전시행사의 기획
공인된 단체 및 미술관·박물관 전시기획	국제교류재단이나 국·공립 미술관, 국·공립 박물관, 권위 있는 재단이나 커미셔너에 의해 기획된 국제전,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한 전국 규모의 공·사립 미술관 및 대안공간에서 주관하는 전시나 전문성이 인정되는 사단법인 및 법인단체와 광역시, 도 이상의 정부부처 산하단체에서 주관하는 전시 및 특정적 장소에서의 프로젝트성 전시행사(인천 여성미술제, 양평 환경미술제 등) 기획
화랑협회 등록 전문화랑 전시기획	미술전문인을 위한 전시공간으로서 개인전 전시구분 마에 해당하는 장소 혹은 단체전 전시구분 다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전시행사 기획
기타 일반 전시기획	미술전문인을 위한 전시공간으로서 개인전 전시구분 마, 사에 해당하는 장소 혹은 단체전 전시구분 라에 해당하는 장소에서의 전시행사 기획

바. 연구업적 인정여부

1) 전시의 인정 기준

- 모든 전시는 매회 미 발표작을 전시하였을 때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국내·외 모든 개인전은 평면일 경우 20호 기준 10점 이상의 미 발표작이 포함되어야만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단, 100호 이상의 평면 작업이거나 입체, 설치, 영상 등은 이에 준하는 크기나 작품으로써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음.(개정 2023.02.28.)

2) 인정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

- 모든 국내외 전시 발표 시 도록과 리플렛을 제출하여야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단, 도록 및 리플렛을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해당 전시회 및 전시작품을 증빙하는데 적합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사. 삭제(2020.06.22.)

3. 음악대학(개정 2018.09.01., 2019.01.01., 2021.03.01., 2024.01.24.)

전공	번호	세부항목	기준점수 (%)	필수	비고
성악	1	• 국내외 연주장 독창회 가. 국외 최고수준 연주장 나. 국내 최고수준 연주장	200 150	○ ○	
	2	• 국내외 연주장 오페라 출연 가. 국외 최고수준의 연주장 오페라 주연 나. 국내 최고수준의 연주장 오페라 주연 다. 막간극 오페라 주연 라. 국내 최고수준의 연주장 오페라 조연(아리아 연주 시) 마. 막간극 오페라 조연(아리아 연주 시)	200 150 75 75 30	○ ○ ○ ○	
	3	• 국내외 교향악단, 심포니 밴드(윈드 오케스트라), 관악 또는 현악 앙상블, 체임버 오케스트라 협연 가. 오라토리오(수난곡, 미사곡, 칸타타 등) 1인 전 악장 협연 일 경우 - 교회연주 제외 나.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 협연(2곡 이상) 다. 심포니, 관현악곡 중 독창	100 50 40	○	
	4	• 국내외 연주장 발표회의 중창 및 독창 전 프로그램 가. 듀오, 트리오, 콰르텟, 퀸텟 전 프로그램 중창 나. 2인 발표회(전 프로그램 1/2 이상 독창 시) 다. 3인 이상 발표회(전 프로그램 1/3 이상 독창 시) 라. 기타 4인 이상 발표회(전 프로그램 1/4 이상 독창 시) 마. 기타 5인 이상 발표회	100 100 75 50 30	○ ○ ○	
	5	• 전국 규모의 학술단체(이태리가곡연구회, 독일가곡연구회, 슈베르트협회, 프랑스가곡연구회, 영미가곡연구회, 우리가곡연구회 등 포함)	40		
기악	6	• 국내외 연주장 독주회 가. 국외 최고수준의 연주장 독주회 나. 국내 최고수준의 연주장 독주회	200 150	○ ○	
	7	• 국내외 연주장 교향악단, 심포니 밴드(윈드 오케스트라), 관악 또는 현악 앙상블, 체임버 오케스트라 협연 가. 국외 최고수준의 연주장 전 악장 협연 나. 국내 최고수준의 연주장 전 악장 협연(2인 이하) 다. 전 악장 협연(3인 이상) 라. 콘서트 피스 협연	200 150 120 50	○ ○ ○	
	8	• 국내외 연주장 발표회의 중주 또는 독주 전 프로그램 가. 듀오, 트리오, 콰르텟, 퀸텟 등 실내악 전 프로그램 나. 2인 발표회(전 프로그램 1/2 이상 독주)	100 100	○ ○	

전공	번호	세부항목	기준점수 (%)	필수	비 고
		시) 다. 3인 이상 발표회(전 프로그램 1/3 이상 독주 시)	75	○	
		라. 기타 5인 이상 발표회(전 프로그램 1/5 이상 독주 시)	50		
		마. 앙상블 연주회	30		
	9	• 전 프로그램 독주회 반주	75	○	
	10	• 전국 규모의 학술단체(피아노학회, 피아노듀오 협회, 리스트협회 등 포함)	40		
작곡	11	• 국내외 공인된 연주장 단독 작곡 발표회	200	○	
		가. 국외 전문연주장 단독 작곡 발표회	150	○	
	12	• 오페라	200	○	
		• 관현악곡(합창곡 포함)	150	○	
13	• 모든 편성의 실내악곡	100	○		
	• 독주곡	75	○		
14	• 부수음악 창작				
	가. 무용음악(개인 및 무용단체 발표회의 전체작곡)	100	○		
	나. 영화음악, 연극음악 등	50			
	다. 가곡	40			
반주	15	• 국내외 연주장 듀오 콘서트			
		가. 최고수준의 연주장 단독 타이틀 프로그램	150	○	
	나. 최고수준의 연주장 공동 타이틀 프로그램	100	○		
16	• 국내외 연주장 독주회 전 프로그램 반주(갈라콘서트 반주 제외)				
	가. 국외 최고수준의 연주장 리사이틀 전 프로그램 반주	100	○		
	나. 국내 최고수준의 연주장 리사이틀 전 프로그램 반주	75	○		
	다. 국내 최고수준의 연주장 전 프로그램 반주(갈라콘서트 포함)	50			
지휘	17	• 공인된 연주장 교향악단 및 전문 연주자로 구성된 심포닉 밴드(윈드 오케스트라, 관악 합주) 정기연주회 및 특별 연주회 전 프로그램 지휘			
		가. 국외 최고수준의 연주장 전 프로그램 지휘	200	○	
	나. 전 프로그램 지휘	150	○		
	18	• 국내외 연주장 국내외 오페라단 지휘			
가. 국외 최고수준의 연주장 오페라 지휘		200	○		
나. 오페라 지휘	100	○			
19	• 국내외 연주장에서 전문 연주자들로 구성된 관악, 현악 앙상블(체임버 오케스트라) 전 프로그램 지휘	75	○		
20	• 국내외 연주장에서 기타 음악회 전 프로그램 지휘				
	가. 발레지휘	75	○		
나. - 협주곡 전 프로그램 지휘(교향악단, 윈	75	○			

전공	번호	세부항목	기준점수 (%)	필수	비고
		드 오케스트라) - 협주곡 전 프로그램 지휘(관악, 현악양상블) 다. 본교 행사 지휘(A급 연주장에 한함)	50 30		

가. 연구업적 75%이상의 경우 연주장 등급에 따라 차등 산정함.(A급 연주장 연주의 경우 기준점수의 100% 인정, B급일 때는 3/4인정, C급일 때는 1/2인정)(개정 2021.03.01.)

나. 연주장 구분 및 등급(개정 2021.03.01., 개정 2021.08.30)

구분 및 등급		상세분류
최고수준의 연주장		The Vienna State Opera, Vienna Musikverein, The Metropolitan Opera(New York City), Carnegie Hall(New York City), Barbican Center(London), Berlin Philharmony Hall 등 주요 도시의 국, 시립극장 등 각국을 대표하는 전문연주장
공인된 연주장	A	성신운정그린캠퍼스 대강당, 수정캠퍼스 수정홀,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성남아트센터, 경기문화의전당, 롯데홀, 용인포은아트홀, 수원sk아트리움, 연세금호아트홀, 영산아트홀, LG아트센터, KBS홀, 한전아트센터, 광림아트센터, 국립극장, 세라믹 팔레스홀, 유니버설아트센터, 고양아람누리, 여수 예술마루, 충무아트센터, 아트센터 인천, 부평아트센터, 엘림아트센터, 수성아트피아, 나루아트센터, 강동아트센터, 북서울 꿈의 숲 아트홀, 반포심산아트홀, 명동대성당(기획연주),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기획연주), 그 외 광역시 문화예술회관 또는 시립교향악단을 소유한 주요도시의 300석 이상 문화예술회관
	B	TLI아트센터, 올림푸스홀, 모차르트홀, 국제아트홀, 코스모스아트홀, 안양아트센터, 성음아트센터, 남동소래아트홀, 오정아트홀, 일신홀, 세일아트홀, 페리지홀, 인천 트라이볼, 푸르지오아트홀, 그 외의 클래식 무대에 적합한 150석 이상의 광역시 구 단위, 지방자치단체 군 단위의 문화예술회관
	C	A 및 B급 연주장 이외의 전문 연주장

1) 연주장 구분 및 등급 표에 명시된 연주장 이외의 종교시설 연주는 인정하지 아니함.(개정 2024.01.24.)

2) 국외 연주장의 경우 국내와 동일한 등급을 적용.

3) 전국 규모의 학술단체란 학문적, 예술적 학술연구 및 연주단체를 의미함.(신설 2021.03.01.)

다. 전공별 연구업적 인정사항

1) 1년 동안 동일한 내용으로 여러 번 발표한 경우(반주 제외) 1회에 한하여 해당점수의 1/2을 추가로 인정하되 필수로 인정하지 아니함.

2) 작곡 : 모든 곡은 미발표 신작이어야 하며, 개작은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3) 반주 16항 : 프로그램의 일부만 반주한 경우는 반주 참여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함.(개정 2024.01.24.)

4) 지휘 : 교향악단 상임지휘자의 경우 기준 점수 150%에 해당되는 연주는 1년에 3회까지만 인정함.

5) 음반제작 : 독집 100, 2인 공동 50, 3인 이상 30.(모든 전공 동일하며 필수 아님.)

라. 증빙자료 제출

- 1) 해당 기간 내 프로그램 제출, 연주장 내부 무대 및 객석의 규모를 알 수 있는 사진 및 동영상을 첨부(A급 제외)하여야 함.
- 2) 작곡은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은 모든 프로그램과 악보를 제출하여야 함.

4. 인문융합예술대학(개정 2021.03.01., 2025.02.27.)

가. 문화예술경영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표1> 문화예술경영학과 공연활동 연구업적 인정기준

분야	주활동*	등급**	지역	배점(단독)	비고
공연(연극/영화/ 드라마/무용/오 페라/콘서트/연 주회/뮤지컬/년 버벌퍼포먼스 등)	기획/프로듀서/ 예술감독	저명	국외	200(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은 1/n 반영 • 60분 이상 공연을 기본으로 하며 공연시간에 따라 차등배점한다. (30-60분 75%, 10-30분 50%)
			국내	150(O)	
		일반	국외	150(O)	
			국내	100(O)	
기타	50				
<p>* 주활동의 정의는 <문예경 별표1>의 정의에 따른다. ** <등급의 구분>은 해당학과에 대응하는 등급을 따른다. 예를 들어 연극관련 기획이라면, 미디어 영상기학과와 공연장 등급을 준용한다. 이에도 불구하고 등급 구분이 안되는 경우 150석 이상의 전문공연장은 일반, 150석 미만의 전문공연장 또는 객석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분야 전문공연장이 아닌 경우는 기타 등급으로 한다.</p>					

<문화예술경영학과 표2> 문화예술경영학과 행사/이벤트의 연구업적 인정기준

분야	주활동*	등급**	지역	배점	비고
행사/ 이벤트	기획/프로듀서/ 예술감독	저명	국제	200(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은 1/n 반영 • 60분 이상 공연을 기본으로 하며 공연시간에 따라 차등배점 (30-60분 75%, 10-30분 50%)
			국내	150(O)	
		일반	국내/국제	100(O)	
		기타	50		
<p>* 주활동의 정의는 <문예경 별표1>의 정의에 따른다. ** 행사/이벤트의 등급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 국제저명행사 : 동·하계 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동·하계 아시안게임에 한한다. • 국내저명행사 : 중앙정부에서 주관하는 행사 • 일반/국내/국제 : 중앙정부의 산하기관, 지방정부(광역지자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 기타 : 상기 사항이 아닌 경우 * 공공행사에 한정하며 상업성 행사와 이벤트는 연구업적 산정에서 제외한다.</p>					

<문화예술경영학과 별표1> 문화예술경영학과 주활동

구분	정의
기획/프로듀서/ 예술감독	실기분야의 전 제작과정에서 비용을 포함한 전체 작품기반을 마련하고 연출, 기획 팀과 소통하여 필요한 부분을 준비하는 활동을 의미하며, 세부 기능별 기획이 아닌, 작품의 계획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을 전체 기획하며 총괄

나. 미디어영상연기학과

(1) 연극분야

<미디어영상연기학과 표1> 연극분야 주활동에 따른 연구업적 인정기준

분야	주활동*	등급**	지역	배점 (장막/단막)	비고
연극	연출/극작	저명	국외	200/150(O)	• 단독기준이며, 공동인 경우 사람 수(=n)로 나누어 계산 • 주연기준이며, 조연의 경우는 주연의 75%로 업적을 산정 • 단독기준이며, 공동인 경우 사람 수(=n)로 나누어 계산
			국내	150/125(O)	
		일반	국외	150/125(O)	
			국내	125/100(O)	
	기타			75/50	
	제작/기획	저명	국외	150/125(O)	
			국내	125/100(O)	
		일반	국외	125/100(O)	
			국내	100/75(O)	
	기타			50/30	
	출연	저명	국외	200/150(O)	
			국내	150/125(O)	
일반		국외	150/125(O)		
		국내	125/100(O)		
기타			75/50		
스텝(예술감독, 지도, 드라마터그, 조명 등)	저명	국외	100/75		
		국내	75/50		
	일반	국외	75/50		
		국내	50/30		

* 주활동의 정의는 <미영연 별표1>의 정의에 따른다.
 ** 등급의 구분은 <미영연 별표2>의 연극분야 등급을 따른다.
 ※ 60분 이상의 연극은 장막, 60분 미만은 단막으로 인정한다.

<미디어영상연기학과 별표1> 연극분야의 주활동 정의

구분	내용/설명
연출	연출의 정의 : 극의 전반적인 작품을 연출하고 연기 지도를 하며 배우, 스텝과 소통하여 작품을 총괄한다.
제작/기획	제작의 정의 : 공연이 만들어지기까지 비용과 전체 기반을 마련하고 연출, 기획팀과 소통하여 필요한 부분을 셋팅한다. 기획의 정의 : 홍보기획 등과 같은 세부 기능별 기획은 제외되고, 작품의 계획부터 시작, 끝까지 모든 과정을 전체 기획하며 총괄한다.
출연	주연과 조연을 의미하며, 단역이나 엑스트라는 인정하지 않는다.
극작	작품이 공연될 수 있도록 희곡을 창작하여 집필함. 또는 소설, 시, 문학작품을 희곡으로 재창작하여 각색함. 기존 희곡 작품을 재해석한 각색은 인정되지 않음.
예술감독	작품을 창작하는 전반의 과정을 총괄함. 연출, 배우와 소통하여 작품의 전반적인 사항을 체크하고 감독한다.
스텝	제작에 필요한 역할 즉 무대, 조명, 지도-(연기지도, 화술지도, 움직임지도), 드라마터그 등 각 부서의 주요역할을 한 경우

<미디어영상연기학과 별표2> 연극분야 등급

구분	국외	국내
최고수준의 국제 연극제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 에든버러 국제페스티벌, 셰익스피어 페스티벌, 체홉 페스티벌	
저명	<p>- 국외 저명한 연극제, 페스티벌 공모전 참가작, 초청작(세계연극제, 이베로 아메리카노 국제연극제, 베세토 연극제)또는 국제 연극제 대회 수상작품 또는 국내외 전문극단(연극협회포함)에서 제작하고, 국제 국립공연장 주, 시, 도립공연장에서 공연한 작품 또는 OECD 국가 와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대만의 전문 제작사가 제작한 작품으로서 300석 이상의 전문 공연장 및 150석 이상의 연극전용 극장에서 공연한 작품</p>	<p>국내 저명한 연극제(대한민국연극제, 서울연극제, 거창국제연극제) 참가작 또는 초청작, 한국연극협회/서울연극협회 주최/주관 페스티벌 작품과 한국연극협회/서울연극협회 선정 수상작품 또는 전문극단(연극협회포함)에서 제작한 작품으로 저명한 극장(LG아트센터, 세종문화예술회관, 예술의전당, 국립극장, 아르코예술극장, 대학로예술극장, 백석희장민호극장(국립극단 판), 서강대 메리홀, 정동 세실극장, 대학로 자유극장, 유니플렉스, 대학로 아트원씨어터, 문화공간 엘림홀, 한양레퍼토리 씨어터, 구로아트밸리, 마포아트센터, 극장 용, 스튜디오76, ck1스튜디오, 선돌극장,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두산아트센터, 광역시도문화예술회관 등에 준하는 극장)에서 공연한 작품</p> <p>- 국가 기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서울시 대관료 지원 공모, 서울형 창작극장)으로부터 지원 받은 작품은 국내 저명으로 인정한다. ※ "광역시도문화예술회관 등에 준하는 극장"에 대해서는 관련 소위원회에서 심의함.</p>
일반	<p>- 국외 저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극전용극장 또는 국외 전문 공연장(150석 이상)에서 공연한 작품</p>	<p>국내 일반 연극제, 공모전 참가작, 초청작(지방자치단체 등 일반 연극제 및 페스티벌) 또는 국내 전문극단(연극협회포함)에서 제작한 작품으로 드림씨어터, 나온씨어터, 동숭무대 소극장, 대학로마당세실극장, 연우소극장, 후암스테이지, 혜화동1번지, 예술공간 혜화 등의 연극전용 극장(콘서트홀 또는 음악 연주장, 강당이 아닌 연극을 공연하기 위한 전문시설-무대, 조명, 객석 등을 모두 갖춘 연극공연극장)에서 공연한 작품</p> <p>※ 국내 일반 연극제, 공모전 참가작, 초청작의 기준은 참가팀 5팀 이상으로 함.</p>
기타	국내에서 제작한 작품으로 기타 극장(국내 저명, 국내 일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극장 및 객석수를 명확히 알 수 없는 형태의 극장, 또는 야외극장)에서 공연한 작품	

(2) 영화분야

<미디어영상연기학과 표2> 영화분야 주활동에 따른 연구업적 인정기준(개정 2023.02.28.)

분야	주활동*	등급**	지역	배점 (장편/단편)	비고	
영화	감독***	저명	국외	200/150(O)	• 단독기준이며, 공동인 경우 사람 수로 나누어 계산	
			국내	150/125(O)		
		일반	국외	150/125(O)		
			국내	125/100(O)		
	기타	75/50				
	제작/기획/ 프로듀서	저명	국외	150/125(O)		• 단독기준이며, 공동인 경우 사람 수로 나누어 계산
			국내	125/100(O)		
		일반	국외	125/100(O)		
			국내	100/75(O)		
	기타	50/30				
	출연	저명	국외	200/150(O)	• 주연기준이며, 조연의 경우는 주연의 75%로 업적을 산정	
			국내	150/125(O)		
		일반	국외	150/125(O)		
			국내	125/100(O)		
	기타	75/50				
	시나리오	저명	국외	200/150(O)		• 단독기준이며, 공동인 경우 사람 수로 나누어 계산
			국내	150/125(O)		
		일반	국외	150/125(O)		
			국내	125/100(O)		
	기타	75/50				
스텝(조명, 촬영, 미술, 편집 등)	저명	국외	100/75	• 단독기준이며, 공동인 경우 사람 수로 나누어 계산		
		국내	75/50			
	일반	국외	75/50			
		국내	50/30			

* 주활동의 정의는 <미영연 별표3>의 정의에 따른다.
 ** 등급의 구분은 <미영연 별표4>의 영화분야 등급을 따른다.
 *** 영화의 경우 제작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는 경우 감독 활동은 프리덕션 단계와 포스트 프리덕션 단계로 나누어서 연구업적을 인정할 수 있으며, 프리덕션단계는 100%(필수)를 인정하며, 포스트 프리덕션 단계는 작품의 등급에 따라 배점기준을 정한다. 1년의 기간이라 함은 계약서의 서명시점과 영화의 개봉시점 간의 간격을 의미한다. 프리덕션 단계의 연구업적 인정은 계약서와 창작물로 증빙하며, 포스트 프리덕션 단계의 인정은 영화개봉과 관련된 계약서로 증빙한다.
 ※ 60분 이상의 영화는 장편, 60분 미만은 단편으로 인정한다.

<미디어영상연기학과 별표3> 영화분야의 주활동(개정 2023.02.28.)

구분	내용/설명
감독	감독 : 영화를 만드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시나리오단계부터 개봉 및 상영까지 제작 총괄.
제작/기획/ 프로듀서	제작 : 영화 제작을 위해 시나리오, 영화감독 등을 선정하고, 제작비 투자 및 사용, 상영극장 섭외 등 제작 및 영화 상영에 관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 기획 : 영화 초기단계인 시나리오 선택부터 감독의 선정 및 스텝 그리고 배우 섭외 및 영화의 진행을 담당하는 역할. 프로듀서 : 전체적인 예산을 기획하고 관리하며 주연배우 및 주요 스텝을 캐스팅하고 제작비를 집행하는데 주로 예산관리 및 집행, 스케줄 관리 등을 담당하는 역할.
출연	영화에 캐스팅되어 해당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로 참여한 경우, 주연과 조연으로 나눈다. 단역이나 엑스트라는 인정하지 않는다.
시나리오	영화를 만드는 기본 요소인 시나리오의 집필을 한 경우.
스텝	제작에 필요한 역할 즉 촬영, 조명, 미술, 편집 등 각 부서의 주요역할을 한 경우.

<미디어영상연기학과 별표4> 영화분야 등급

구분	국외	국내
최고수준의 국제영화제	아카데미 영화제, 세계3대 국제(칸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 영화제, 세계 3대 국제 단편(오버하우젠 국제 단편영화제, 클레르몽페랑 국제 단편영화제, 탐페레 국제 단편영화제) 영화제	
저명	<p>- 국외의 단체가 주관하는 저명한 국제영화제 (토론토 국제 영화제, 선댄스 영화제, 몬트리올 세계 영화제, 스톡홀름 국제 영화제, 로카르노 국제영화제, 로테르담 국제 영화제, 모스크바 국제 영화제, 카를로비바리 영화제, 시체스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도쿄 국제 영화제, 상하이 국제 영화제, 트라이베카 국제 영화제, 토리노 국제 영화제 등)의 초청을 받은 작품 또는 OECD 국가와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대만의 전문 제작사가 제작한 작품으로서 전문(예술)영화상영관 상영작. 또는 OECD 국가와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대만의 전문 제작사가 제작한 작품으로서 유명 콘텐츠 플랫폼(넷플릭스, 애플, 디즈니, 아마존, 구글, 아이치이, 텡스핀, 유쿠등)으로 상영한 작품.</p>	<p>- 국내의 저명한 국제영화제 (부산국제, 전주국제, 부천국제판타스틱,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등)의 초청을 받은 작품이나 국내의 저명한 영화제(대중상영화제, 청룡상 영화제, 백상예술대상 등)의 초청을 받은 작품 또는 국내의 전문 제작사가 제작하고 국내 전문(예술)영화상영관 상영작. 또는 국내 지상파, 종합편성 채널, tvN, OTT(넷플릭스, 애플, 디즈니, 아마존, 구글등의 해외 유명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과 LG U플러스, 왓챠 플레이, WAVVE, SMART CINEMA, KT, 카카오TV, SKT, TVING, Seezn(시즌), 쿠팡플레이 등 국내 유명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등에 상영한 작품.</p> <p>- 국가 기관(문화체육관광부 등) 및 공공기관(영화진흥위원회, 한국 콘텐츠 진흥원 등)으로부터 지원 받은 작품의 경우 국내 저명으로 인정한다.</p>
일반	<p>- 국제영화제 초청 또는 국내외 제작사가 제작한 작품으로서 국외의 상영관 상영작. 또는 국내외 제작사가 제작한 작품으로서 국외의 전문 영화 온라인 상영 플랫폼에 상영한 작품.</p>	<p>- 국내의 제작사가 제작한 작품으로 국내 상영관 상영작. 또는 시네 허브, 네이버, 무비블록, 플랫폼 퍼플레이 등 국내 전문 영화 온라인 상영 플랫폼에 상영한 작품.</p>
기타	- 국외일반 국내일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영작.	
* VR영화의 경우 전문(예술)영화상영관이 아니어도 HMD기기가 세팅된 상영장일 경우 업적으로 인정.		

(3) 드라마분야

<미디어영상연기학과 표3> 드라마 분야 주활동에 따른 연구업적 인정기준

분야	주활동*	등급**	지역	배점	비고	
드라마	연출/대본	저명	국외	200(O)	• 단독기준이며, 공동인 경우 사람 수로 나누어 계산	
			국내	150(O)		
		일반	국외	150(O)		
			국내	100(O)		
	기타		75			
	제작/기획	저명	국외	150(O)		
			국내	125(O)		
		일반	국외	125(O)		
	국내		100(O)			
	기타		50			
	출연	저명	국외	200(O)		• 주연기준이며, 조연의 경우는 주연의 75%로 업적을 산정
			국내	150(O)		
		일반	국외	150(O)		
			국내	100(O)		
기타		75				
스텝(조명 등)	저명	국외	100	• 단독기준이며, 공동인 경우 사람 수로 나누어 계산		
		국내	75			
	일반	국외	75			
		국내	50			

* 주활동의 정의는 <미영연 별표5>의 정의에 따른다.
 ** 등급의 구분은 <미영연 별표6, 7>의 드라마분야 등급과 인정비율을 따른다.

<미디어영상연기학과 별표5> 드라마 분야의 주활동

구분	내용/설명
연출	드라마를 만드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극본단계부터 방영까지 제작 총괄한다.
제작/기획	제작 : 드라마 제작을 위해 극본, 연출 등을 선정하고, 제작비 투자 및 사용, 방송편성권 확보 등 제작 및 드라마 방영에 관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 기획 : 드라마 초기단계인 극본 선택부터 연출의 선정 및 스텝 그리고 배우 섭외 및 드라마 제작의 진행을 담당하는 역할.
출연	드라마에 캐스팅 되어 해당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로 참여한 경우, 주연과 조연으로 나눈다.
대본	드라마를 만드는 기본 요소인 대본의 집필을 한 경우.
스텝	제작에 필요한 역할 즉 촬영, 조명, 미술, 편집 등 각 부서의 주요역할을 한 경우.

<미디어영상연기학과 별표6> 드라마 분야 등급

구분	국외	국내
저명	-해외의 유명한 지상파, 케이블, OTT 채널	-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tvN, OTT 채널
일반	-해외의 유명 유료 채널	- 유료채널
기타	- 저명작품, 일반작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작품	

<미디어영상연기학과 별표7> 방송(드라마) 구분 및 인정비율(개정 2025.02.27.)

유형	길이	반영비율	비고
미니시리즈	60분*10회 이상	100%	
	60분*10회 미만	80%	
장편드라마	60분*30회 이상	100%	
	60분*30회 미만	80%	
일일연속극	30분*100회 이상	100%	
	30분*100회 미만	80%	
단막드라마	60분*2회 내외	80%	
시추에이션드라마	35분*20회 이상	100%	
	35분*20회 미만	80%	
OTT드라마	30분*6회 이상	100%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애플TV플러스, 프라임 비디오, 티빙, 쿠팡플레이, 왓챠, 웨이브 플랫폼에서 방영한 작품에 한함
	30분*6회 미만	80%	
기타	30분 이하 길이 10회 내외 방영분	50% 반영	

다. 현대실용음악학과

(1) 창작물분야

<현대실용음악학과 표1>창작물 활동 분야의 연구업적 인정기준

분야	주활동*	등급**	지역	배점	비고
창작물 활동 (작곡)	음반	저명	국외	200(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반은 본인 이름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또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에 등록된 음원에 한함 정규앨범(40분 이상)을 기준으로 EP(40분 미만)는 정규앨범의 2/3, 싱글(2곡 또는 10분 이하)은 1/3을 인정하며, 음니버스의 경우 (곡수)로 나누어 적용
			국내	150(O)	
		일반	국외	150(O)	
			국내	100(O)	
	기타		50		
	영화, 드라마, 뮤지컬	저명	국외	200(O)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점의 가감은 곡의 길이나 곡의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분 이상 또는 10곡 이상 : 100% - 30분 이상 또는 5곡 이상 : 50% - 10분 이상 또는 2곡 이상 : 30% 장편영화의 음악감독(단독)인 경우 전체 음악 상영시간 대비 본인 작곡 음악 시간 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50-100인 경우 100% 인정, 50% 미만인 경우 75% 인정) 곡의 수와 길이에서 교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
			국내	150(O)	
		일반	국외	150(O)	
			국내	100(O)	
	기타		50		
	공연 부수음악 (무용, 연극 등)	저명		100(O)	음대 작곡과 기준
		일반		50	
	기타 방송	저명		100(O)	
		일반		50	
기타			25		
행사	저명	국·내외	200(O)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사 : 동·하계 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 선수권대회, 동·하계 아시안게임에 한함 	
* <현실음 별표1>의 정의에 따른다.					
** 음반의 경우에는 <현실음 별표2>를 따르며, 음반이 아닌 기타 창작물의 경우에는 융합예술대학 각 학과에서 정의한 등급을 따른다. 예를 들어 영화음악이라면 미디어 영상연기학과와 영화등급을 따른다.					

<현대실용음악학과 별표1> 현대실용음악학과 창작물분야의 주활동

역할	정의
음반	음반이란 CD, LP, 카세트, 디지털 음원 등을 의미한다.
영화, 드라마	영화음악, 드라마 음악은 영화 또는 드라마에 삽입되는 최소 10분 이상 또는 2곡 이상의 배경음악, 주제곡 등과 관련된 음악창작물을 의미한다.
공연	공연을 위해 삽입되는 최소 10분 이상 또는 2곡 이상의 음악창작물을 의미한다.
기타 방송	기타 방송음악은 시사프로그램, 다큐멘터리, 교양프로그램 등에 삽입이 되는 최소 10분 이상 또는 2곡 이상의 배경음악, 주제곡 등과 관련된 음악창작물 의미한다.
행사	행사를 위해 삽입되는 최소 10분 이상 또는 2곡 이상의 음악창작물을 의미한다.

<현대실용음악학과 별표2> 현대실용음악학과 음반분야 등급

구분	국외	국내
저명	소니뮤직,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	카카오M, 지니뮤직, 멜론, NHN벅스, CJE&M, 소니뮤직코리아, 유니버설뮤직코리아, 워너뮤직코리아, Dreamus, 인터파크, 스톤뮤직
일반	툰코어	뮤직앤뉴, 루미너트, 한국음반산업협회, 퍼플파인, 포크라노스, 미러볼뮤직, 오감엔터테인먼트
기타	저명과 일반에 해당하지 않는 음반	

(2) 공연분야

<현대실용음악학과 표2> 공연활동 분야의 연구업적 인정기준

분야	주활동*	등급**	지역	배점	비고	
공연	독주	저명	국외	200(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분 이상의 공연 • 페스티벌 초청작은 40분 이상의 공연 	
			국내	150(O)		
		일반	국외	150(O)		
			국내	100(O)		
	기타	50				
	독창	저명	국외	200(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분 이상의 공연 • 페스티벌 초청작은 40분 이상의 공연
			국내	150(O)		
		일반	국외	150(O)		
			국내	100(O)		
	기타	50				
	조인트 리사이틀 (가창과 악기 공동)	저명	국외	독주(창) * 1/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분 이상의 공연 • 조인트 리사이틀의 경우에는 독창기준의 배점을 인원수로 나눔 • 연구업적은 일반으로 산정 	
			국내			
		일반	국외			
			국내			
	기타	독주(창) * 1/n				
	뮤지컬/오페라	저명	국외	200(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분 이상의 공연 • 주연 기준이며 조연은 주연 기준점수의 50% 인정
국내			150(O)			
일반		국외	150(O)			
		국내	100(O)			
기타	50					

* <현실음 별표3>의 정의에 따른다.
** <현실음 별표4>의 공연장 등급을 따른다.

<현대실용음악학과 별표3> 현대실용음악학과 공연분야의 주활동

구분	정의
독주	독주는 공연자의 이름으로 개최되는 연주를 의미한다.
독창	독창은 공연자의 이름으로 개최되는 가창을 의미한다.
조인트 리사이틀	공연의 특성상 여러 가창자가 공동으로 공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악기연주와 가창을 포함하며, 단순한 보조출연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뮤지컬/오페라	여러 출연자들이 공동으로 출연하여 공연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주연과 조연으로 나누어 역할을 구분한다. 단순 출연은 산정에서 제외한다.

<현대실용음악학과 별표4> 현대실용음악학과 공연분야 등급

구분	국외	국내
저명	링컨센터, 파크애비뉴아모리, 로얄알버트홀, 글래스톤베리페스티벌, 코첼라밸리뮤직&아츠페스티벌, 사우스바 이사우스웨스트뮤직페스티벌	예술의전당, LG아트홀, 세종문화회관, 롯데콘서트홀, 영화의전당, 올림픽공원내공연장, 언더스테이지, 라움(RAUM), 대림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연세대100주년기념관, 디뮤지엄, 서울시립미술관, 일민미술관, 노들섬 라이브하우스, 삼성홀, 메리홀, 이화여고100주년기념관, 브이홀, 정동극장, 광역시, 도 문화예술회관, 서울재즈페스티벌, 그랜드민트페스티벌, 슬로우라이프슬로우라이브,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서울숲재즈페스티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레인보우아일랜드, 뷰티풀민트라이프
일반	록우드뮤직홀, 바위리볼룸, 서머소닉 페스티벌, 홀리데이랜드, 서머페스트	영산아트홀, CKL스테이지, 플랫폼창동61, 마리아칼라스홀, 우리금융아트홀, KB아트홀, KT&G상상마당, 판스퀘어, 폼텍익스홀, 스트라디움, 웨스트브릿지, 백암아트홀, DMZ피스트레인뮤직, 울트라뮤직페스티벌, 유어썸머페스티벌, 멜로디포레스트, 렛츠락페스티벌, 그린플러그드, 서울뮤직페스티벌
기타	저명과 일반에 해당하지 않는 공연장 및 페스티벌	

라. 무용예술학과

<무용예술학과 표1> 연구업적 인정기준(개정 2024.01.24.)

분야	주활동*	등급**	지역	배점	비고
무용	예술감독/연출	저명	국외	200(O)	• <무용예술 별표 3, 4>의 인정비율 반영
			국내	150(O)	
		일반	국외	150(O)	
			국내	100(O)	
		기타	국내외	30	
		창작 안무 발표	저명	국외	
	국내			150(O)	
	일반		국외	150(O)	
			국내	100(O)	
	기타		국내외	30	
	출연		저명	국외	200(O)
		국내		150(O)	
일반		국외	150(O)		
		국내	100(O)		
기타		국내외	30		

* <무용예술 별표1>의 정의에 따른다.
 ** <무용예술 별표 2>의 등급을 따른다.
 ※ 모든 주활동은 초연만 인정하며 순회공연의 경우 초연된 해의 최상급 공연장 공연 1회에 한해 점수 산정을 한다.
 ※ 초연 후 3년이상 경과한 재구성, 재안무는 기준 점수의 70%를 인정하고 필수로 인정하지 않는다.

<무용예술학과 별표1> 무용예술 분야의 주활동(개정 2024.01.24.)

구분	내용/설명
예술감독 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감독: 저명 무용단/발레단 등의 단원 선발과 운영 등을 총 책임지는 역할 또는 축제 등의 공연작품을 선정하고 이의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공인 페스티벌과 무용축제는 전체 프로그램의 총예술감독만 인정한다. 그 외 개별 작품에 대한 예술감독은 60분 이상 공연 전체에 한하여 인정한다. 연출: 안무자의 보조 역할로 극적인 움직임 지도나 무대의 분위기, 장치의 디자인 등을 제안하는 역할을 함
창작안무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무: 주제의 선정, 무용의 내용을 창작하고 내용의 흐름을 분석하여 장면으로 구성한 다음 장면에 맞는 신체의 움직임을 고안하는 창작 활동을 의미
출연	직접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을 의미하며 무용의 경우 주연/조연의 구분이 모호하지만 발레의 경우에는 주연과 조연의 역할 구분이 명확함

<무용예술학과 별표2> 무용예술 공연분야 등급

구분	내용
저명	<p>국제:</p> <p>①무용단/극장 기준: 볼쇼이 발레단, 마린스키발레단, 파리오페라 발레단, 보리스에이프만 발레단, 호페 쉬 섹터 무용단, 피나바우쉬 탄츠씨어터, 마사그라함 댄스 씨어터, 엘빈 에일리 댄스 씨어터, 바체바 댄스 씨어터, 네델란드 댄스 씨어터, 함부르크 발레 씨어터, 베를린 탄츠 씨어터, 모리스 베자르 발레단, 빈 국립 무용단, 파리 국립 무용단, 몬트리올 무용단</p> <p>②페스티벌 기준: 프랑스 아비뇽 페스티벌, 몽펠리에댄스페스티벌, 호세리몽 페스티벌, 넥스트웨이브 페스티벌,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 홍콩 댄스 페스티벌, 킬로스 국제 여름 페스티벌</p> <p>③공연장 기준: OECD +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타이완 소재 무용전문 공연장 중 객석수 기준 300석 이상인 공연장</p> <p>국내:</p> <p>①공연장 기준(학장실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명 공연장: 세종문화회관(대,중,소극장), 아르코예술극장(대극장, 소극장), 대학로예술극장(대극장, 소극장), 예술의전당 (토월, 자유소극장, 오페라극장), 국립국악당(예악당, 우면 당, 풍류극장), 강동아트센터(대극장, 소극장), 서강대 메리홀, 유니버설아트센터, 한국문화의 집(KOUS), 전통문화예술공연장, 마포아트센터, 나루아트센터, 고양아트센터, 충무아트센터(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세종M씨어터, 성암아트홀, 성수아트홀, 안산예술의전당, 남산국악당, 광역시,도 문화예술회관 <p>②무용단 기준(유명 무용단체와 협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립무용단, 국립국악원 무용단,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유니버설 발레단 <p>③지원단체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단독 공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서울문화재단, 국제교류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전문무용수지원센터,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한문연) 등 국립단체 초청받은 안무 작품 : 국립무용단,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도시립무용단, 스파프(국제공연예술제) <p>④페스티벌 기준(학장실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 부산국제여름무용축제, 부산국제무용축제, 세종국제무용제, 춘천 아트 페스티벌, 서울무용제, 대한민국 무용축제, 한국무용제전, 고무신춤축제, 국제현대무용제(MODAFE), 대한민국 발레 축제, 서울 국제 공연 예술제(SPAP), 현대춤작가12인전
일반	<p>①국제(내) 공인된 무용 전문 공연장(150석 이상)에서의 개인/단독공연 안무 및 연출: OECD + 중국, 러시아, 싱가포르, 타이완 소재 민족 페스티벌 공연</p> <p>②국제 전문 무용단과 협연 혹은 협업한 공연</p> <p>③민간 전문단체 기획공연 초청 안무, 연출 및 출연 (한국무용협회, 발레협회, 현대춤협회, 시댄스, 현대무용협회, 한국춤협회)</p> <p>④광역시 구단위, 지방자치단체 군단위의 문화예술회관</p>
기타	위의 기준을 만족하지 않은 전문 공연장 공연 작품

<무용예술학과 별표3> 무용예술 공연시간에 따른 인정비율

구분	60분 이상	30분 이상 ~ 60분 미만	10분 이상 ~ 30분 미만
인정 비율	100%	75%	50%
비고	- 안무, 예술감독, 연출, 출연(주연, 조연, 독무, 군무): 전체 작품의 공연 시간 - 공연 내 작품 구분이 되는 경우 본인 출연 시간만 반영 - 페스티벌 초청작은 30분 이상 100%, 30분 미만 50% (초연만 인정)		

<무용예술학과 별표4> 무용예술 공동활동에 따른 인정비율

구분	단독	공동
인정비율	100%	1/n
비고	예술감독, 연출, 안무, 출연(무용)에만 적용	

마. 공통(신설 2018.09.01., 개정 2022.01.01.)

- (1) 업적 인정을 위해서 공식 자료(소속이 명시된 프로그램 리플렛, 팸플렛 등), 작품 실물 또는 공연사진과 동영상, 계약서 등을 통해 작품 활동과 역할, 공연장 규모 등이 객관적으로 증빙되어야 함. 기획, 제작 등의 주활동은 공식 자료로 다음 사항을 추가 제출해야 함

<공통 표1> 기획 등 주활동에 대한 증빙자료

구분	증빙서류
기획	프로그램 안내서, 기획서, 기획을 위한 각종 서신 및 관련 서류, 보고서 등
제작(프로듀서)	프로그램 안내서, 투자결정서, 계약서 등
연출	프로그램 안내서, 작품실물, 상영(공연) 또는 상영작(공연장)의 작품관련 사진 등
감독	프로그램 안내서, 작품실물, 상영(공연) 또는 상영장(공연장)의 작품관련 사진 등

- (2) 첫 공연 후 3년이 경과한 재공연은 1회에 한하여 70%만 인정하며 필수로 인정하지 않음
- (3) 동일작품에 여러 주활동을 수행했을 경우, 핵심 주활동 한 가지만 인정함

5. 기타(개정 2011.11.19., 2015.11.12., 2017.3.1., 2018.09.01., 2020.12.23., 2021.03.25)

번호	세부항목		기준 점수 (%)	필수	학과	
1	작품 활동	문학(단행본으로 발간된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150		어문계열학 과	
2	방송 활동	공중파 전국방송 정규 프로그램	주진행자	100	○	미디어커뮤 니케이션학 과, 교양학부 (개정 2021.03.25.)
3			케이블 및 위성TV의 정규 프로그램	주진행자	75	
		보조진행자		50		
4		해당 전공 강의의 디지털 영상 출연(Internet, IP TV 또는 스마트폰 앱 강좌)	주진행자	50	○	
			보조진행자	25		
5	의류 실기	국외 화랑협회 등록 전문 화랑 공인된 단체 및 미술관 개인전 (최초 공개 작품 15벌 이상)	150	○	의류산업학과 (개정 2018.09.01.)	
6		국내 화랑협회 등록 전문 화랑 공인된 단체 및 미술관개인전 (최초 공개 작품 15벌 이상)	125	○		
7		관련 기업 및 공인된 단체의 기획인 연출	75			
8		국내·외 공인된 단체(한국연구재단등재 및 후보 학회) 의 회원전 및 초대전	40			
		기타 일반 단체전	20			
9	경기 참가	단장, 감독, 코치, 심판, 안무, 지도로 경기 참가	올림픽 경기	200		스포츠과학 부(개정 2021.03.25.)
			아시안 게임	150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 대회	100		
			전국규모대회	50		
10	대학 평가 및 재정 지원 사업	정부기관주도 대학평가 및 각종 재정지원 사업참여	연구보고서	50~150	○	전 학과
			담당부서 (산하 프로그램 별 사업단 포함)의 장			
11	뷰티 작품	국외 화랑협회 등록 전문 화랑 공인된 단체 및 미술관 개인전 (최초 공개 작품 18점 이상)	150	○	뷰티산업학과 (개정 2018.09.01.)	
		국내 화랑협회 등록 전문 화랑 공인된 단체 및 미술관개인전 (최초 공개 작품 18점 이상)	125	○		
		관련 기업 및 공인된 단체의 기획이나 연출	75			
		국내·외 공인된 단체(한국연구재단등재 및 후보 학회) 의 회원전 및 초대전	40			
		기타 일반 단체전	20			

가. 공통사항

- 1) 전시작품은 최초공개 작품에 한해 연구업적으로 인정함.(개정 2018.09.01.)
- 2) 해외 : 한국을 제외한 OECD(중국포함) 국가.(신설 2018.09.01.)

나. 방송활동

- 1) 개인실기 2, 3, 4항의 주진행자를 필수요건으로 함.
- 2) 개인 실기 연구업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진행하여야 하며(주1회 이상 진행), 편성시간 20분 이내의 프로그램은 주진행자라 하여도 보조 진행자로 간주함.
- 3) 주진행자는 2명 이상일 수 있음.
- 4) 방송활동을 합쳐 연 2개 이상의 실적이 있을 경우 2개까지만 인정함.
- 5) 모든 프로그램은 신규제작에 한하여 인정함.

다. 의류실기

- 1) 개인실기 5항을 필수요건으로 함.
- 2) 단독 부스 개인전은 연구업적 인정하지 않음.

라. 경기참가

- 1) 동일선수, 동일팀 출전의 경우 최대 2회까지 인정하며, 중복으로 될 경우 최고점만 인정함.
- 2) 전국규모대회 : 대한체육회 산하단체 주관대회

마. 대학평가 및 재정지원사업(개정 2020.12.23.)

1) 연구보고서

- 가) 연구보고서 제출일 현재 집필 연구위원으로서 총장이 업적 승인을 요청한 보고서에 한하며, 연간 실적 200%를 넘지 않음.
- 나) 연구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함.
- 다) 연구업적 인정은 평가결과 발표 이후에 정함.

2) 담당부서(산하 프로그램별 사업단 포함)의 장

- 가) 연간 3억 이상의 중앙 또는 지방정부 재정지원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당해 업무 수행을 사유로 하여 별도의 수당을 받거나 교원 책임시간을 면제받지 아니한 자이어야 함.
- 나) 참여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총장이 업적 승인을 요청한 자에 한함.

3) 삭제

바. 뷰티작품

- 1) 국·내외 화랑협회 등록 전문화랑, 공인된 단체 및 미술관 개인전 (최초 공개 작품 18점 이상)을 필수요건으로 함.(개정 2018.09.01.)

부 칙(2023.03.16. 개정)

① (시행일) 이 개정 기준은 2023년 3월 1일 이후 업적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01.24. 개정)

① (시행일) 이 개정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업적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02.27. 개정)

① (시행일) 이 개정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업적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03.30. 개정)

① (시행일) 이 개정 기준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업적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평가계열의 구분(개정 2024.01.24., 2025.02.27., 2026.03.30.)

평가계열	소속 단과대학(학과·부)
인문·사회	인문융합예술대학(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일어문·문화학과, 프랑스어문·문화학과, 일본어문·문화학과, 중국어문·문화학과, 사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 생활산업대학(스포츠과학부, 소비자산업학과), 사범대학, 창의융합대학(국제학부, 국제학부 글로벌한국학, 창의융합학부), 본 계열 관련 각 대학원 및 학과
예능	생활산업대학(뷰티산업학과), 미술대학, 음악대학, 인문융합예술대학(무용예술학과, 미디어영상연기학과, 현대실용음악학과), 창의융합대학(국제학부 뷰티·패션디자인), 본 계열 관련 각 대학원 및 학과
이공 (이론)	자연과학대학(수리통계데이터사이언스학부), IT융합대학(AI융합학부, 서비스디자인공학과, 융합보안공학과, 컴퓨터공학과), 간호대학, 생활산업대학(의류산업학과), 본 계열 관련 각 대학원 및 학과
이공 (실험)	자연과학대학(화학·에너지융합학부, 바이오헬스융합학부), 공과대학(바이오생명공학과 , 바이오식품공학과, 청정신소재공학과, 바이오신약의과학부), 본 계열 관련 각 대학원 및 학과